

의안번호	제 572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0년 11월 2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7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0년 11월 2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,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통합기금의 계정구분(안 제2조)
-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(안 제3조)
-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(안 제4조)
- 기금의 존속기한(안 제18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충청북도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,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통합기금의 계정구분)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.

제3조(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
2. 통합 계정 용자금의 상환액 및 이자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1.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4.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

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출연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연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을 초과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2.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. 다만, 지방세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,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7조 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 및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.
3. 그 밖에 도지사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

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

가. 충청북도의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
나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2. 일반회계,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
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조(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통합기금은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운용·관리하되,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운용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통합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금고 별도의 계좌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회계공무원) ①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통합기금운용관: 기획관리실장

2. 분임통합기금운용관: 예산담당관

3. 기금운용관: 기금을 보유한 각 부서의 장

4. 통합기금출납원 : 통합기금업무 담당 사무관

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예탁의무)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 다만, 도지사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8조(예탁기간 및 이율) ①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.

② 예탁금의 이자율은 도금고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설치)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기금운용관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

1. 도 본청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

2. 기금관련 전문가

3. 공인회계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

4.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.

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통합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, 예산 및 결산,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2.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
4. 다른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
5. 그 밖에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11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.

제12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3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14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통합기금 결산 등을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5조(예탁금의 만료 기한 전 상환) ① 예탁금은 통합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예탁기간 만료 전에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6조(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도지사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여유자금의 자료를 매년 9월 30일까지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(수당 등의 지급)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8조(기금의 존속기한)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통합
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의 채
권·채무는 이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한다.

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
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
원회로 본다.

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통합관
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통
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
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」 일
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 하되, 여유자금은 「통합재정안정
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
한다.

② 「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여유자금은 「통합재정안정화
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
한다.

③ 「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여유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

④ 「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”로 한다.

⑤ 「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여유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에 따라 통합 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

⑥ 「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여유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

⑦ 「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여유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

⑧ 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”로 한다.

⑨ 「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4조(기금운영 심의)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9조 및 제11조제4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⑩ 「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여유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

⑪ 「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도지사는 기금을 도금고(체육진흥기금 계좌)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

기금의 여유자금은 「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 7조에 따라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

⑫ 「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기금은 도 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기금 중 여유 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.

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,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운용·관리

2. 비용 발생 요인 :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

3. 관련조문

- 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출연하여야 한다. (중략)
- 1.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을 초과한 경우,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
- 2.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. (이하생략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재정수반요인 : 재정안정화 기금의 재원

나. 추계의 전제 : 지방세 세입액이 직전 회계연도 보다 20% 초과한 경우
순세계잉여금이 최근3년 평균금액의 20%를 초과한 경우

다. 추계의 결과 : 최근 5년간 결산자료 검토시 20억 발생

(단위 : 억원)

구분	‘15년		‘16		‘17		‘18		‘19	
	결 산	가능액	결 산	가능액	결산액	가능액	결 산	가능액	결 산	가능액
지방세	9,679	-	10,053	-	10,664	-	11,346	-	12,904	-
순세계	2,253	-	2,227	-	2,048	-	2,712	20	2,100	-

라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예측불가

6. 작성자 : 충청북도 예산담당관 신성영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"통합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"예수금"이라 한다)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